【 도난보험 사업방법서 별지 】

1. 보험의 종류: 특종-기타-도난

2. 보험의 목적에 관한 사항

가) 동산

나) 법률상의 배상책임

3. 보험기간

보험기간은 1 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 년 미만의 단기계약 또는 3 년 내에서 1 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4.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

보험료 납입주기: 일시납

5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6. 기타 필요한 사항

가) 판매채널: 범용

나) 자동대출납입: 해당 없음

다) 보험계약자배당: 해당없음

라) 보험계약대출: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아니한다.

마) 보험종목의 변경: 해당없음

바)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만 부가할 수 있다.

사)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한다.

1) 「소득세법 제 59 조의 4(특별세액공제) 제 1 항 제 2 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
2)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(장애인의 범위) 제 1 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
아)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)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며, 관련법령이 제·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

2)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음